

	지역사회 협력·기여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8. 3. 2.
		최종개정일자	2020. 12. 14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 및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·기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서) ①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산학처로 한다.

②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.

유형	주요활동	운영부서
지역사회 봉사	- 지역학생 중학생 프로그램 지원(자유학기제)	기획산학처
	- 영·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	산학협력단
	- 농촌활동 봉사	교무입학처
	- 지역 고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	행정지원처
	- 주민 시설 개방	학과
평생교육 제공	- 문화 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	평생교육원
	- 비학위 운영	평생교육원
지자체 협력	- 지자체 사업 지원, 전문인력 제공	기획산학처 산학협력단
지역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	- 노인 관련 봉사활동, TOWS 프로그램 운영,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	특성화 사업단

제3조(계획의 수립) ①주관부서는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위한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매년 3월까지 수립한다.

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사회 봉사(특성화 사업)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평생·직업교육 제공에 관한 사항
3. 지자체 및 지역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
4. 지역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

제4조(계획의 추진)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운영부서의 책임하에 운영계획을 추진한다.

제5조(운영결과 제출) 운영부서는 매 학년도 운영결과를 기획산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결과 자문 및 보고) 주관부서는 운영부서의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2장 지역사회협력위원회

제7조(설치)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자문하기 위해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며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산학처 직원이 담당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자문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수요분석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·기여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제3장 환류체계

제11조(환류체계) ①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운영부서에 알리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운영부서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.

②주관부서와 운영부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